

최 고 공 고 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2년 10월 24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세대주 성명	성 명 생 년 월 일	주 소	지연 신고사항
성**	성** 1961-10-25	강원도 속초시 영랑동	무단전출
김**	김** 1970-05-16	강원도 속초시 영랑동	무단전출
박**	박** 1960-03-10	강원도 속초시 영랑동	무단전출
정**	정** 1954-03-22	강원도 속초시 영랑동	무단전출
조**	조** 1966-12-03	강원도 속초시 영랑동	무단전출
이**	이** 1958-07-28	강원도 속초시 장사동	무단전출
조**	조** 1960-09-18	강원도 속초시 장사동	무단전출
최**	최** 1967-03-29	강원도 속초시 장사동	무단전출
엄**	엄** 1971-11-10	강원도 속초시 장사동	무단전출
최**	최** 1963-03-06	강원도 속초시 장사동	무단전출

※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제2항).

(담당자 : 이 지민 문의전화 : 033-639-2851)

2012년 10월 15일

영랑동장 인

